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한 스포츠유산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예술인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국제관광 관련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2. ~ 6.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05”를 “206”으로,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85”를 “184”로 한다.

별표 2 중 행정서기보 “3”을 “4”로, 운전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2의2 행정서기 3 다음에 “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무대서기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 1”을 삭제하며, 방호서기보 3 다음에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송무대서기보 1”을 신설하고, “시설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3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5 다음에 “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신설하고,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및 “임업사무관 1”을 각각 삭제하며, “임업주사 1”을 삭제하고, 시설주사 3 다음에 “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며, 시설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 다음에 “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을 신설하고, “임업주사보 1”을 삭제, 공업서기 “13”을 “12”로,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7”을 “6”으로 하고,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6 다음에 “공업서기·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4”를 신설하며, “임업서기 2”를 삭제, 공업서기보 3 다음에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를 신설하며,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 및 “임업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2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5 다음에 “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신설하고,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및 “임업사무관 1”을 각각 삭제하며, “임업주사 1”을 삭제하고, 시설주사 3 다음에 “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며, 시설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 다음에 “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하고, “임업주사보 1”을 삭제, 공업서기 “13”을 “12”로,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7”을 “6”으로 하고,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6 다음에 “공업서기·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4”를 신설하며, “임업서기 2”를 삭제, 공업서기보 3 다음에 “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2”를 신설하고,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 및 “임업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중 공업주사보 “4”를 “3”으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공업주사보 “4”를 “3”으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

한다.

별표 7 중 시설주사 “3”을 “2”로 하고, 시설주사 2 다음에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3 다음에 “식품위생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1”을 신설하고, “위생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7의2 중 시설주사 “3”을 “2”로 하고, 시설주사 2 다음에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3 다음에 “식품위생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1”을 신설하고, “위생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8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임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를 “3”으로 하고, “건축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1항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7년 6월 30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5년 8월 31일”을 “2027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별표 1의2의 정원1명(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7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u>2025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 ----- ----- ----- ----- ----- --- <u>2026년 6월 30일</u> ----- -----.
② · (생략)	② · (현행과 같음)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포츠유산팀은 <u>2025년 6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 <u>20</u> <u>27년 6월 30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9호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9호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예술인지원팀은 <u>20</u> <u>25년 8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 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u> <u>27년 8월 31일</u> -----.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사서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학예연구관	• • <u>205</u>	• • <u>206</u>	+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 <u>185</u>	• <u>184</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u>3</u>	<u>4</u>		+1	
		•		•	•		
		•		•	•		
운전서기보			<u>3</u>	<u>2</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방송무대서기</u>	<u><신 설></u>	<u>1</u>	+1
<u>공업서기</u>	<u>1</u>	<u><삭 제></u>	-1
·	·	·	
<u>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방송무대서기보</u>	<u><신 설></u>	<u>1</u>	+1
<u>시설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u> <u>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3</u>	+3
<u>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2</u>	<u><삭 제></u>	-2
<u>임업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	•	•	
<u>임업주사</u>	<u>1</u>	<u><삭 제></u>	-1
•	•	•	
<u>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u> <u>시설주사</u>	<u><신 설></u>	<u>1</u>	+1
•	•	•	
•	•	•	
<u>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u> <u>또는 시설주사보</u>	<u><신 설></u>	<u>1</u>	+1
<u>임업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공업서기	<u>13</u>	<u>12</u>	-1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7</u>	<u>6</u>	-1
<u>공업서기·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u>	<u><신 설></u>	<u>4</u>	+4
<u>임업서기</u>	<u>2</u>	<u><삭 제></u>	-2
·	·	·	
·	·	·	
<u>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u>	<u><신 설></u>	<u>2</u>	+2
<u>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u>	<u>1</u>	<u><삭 제></u>	-1
<u>임업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u> <u>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5</u>	+5
<u>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4</u>	<u><삭 제></u>	-4
<u>임업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	•	•	
<u>임업주사</u>	<u>1</u>	<u><삭 제></u>	-1
•	•	•	
<u>공업주사·임업주사 또는</u> <u>시설주사</u>	<u><신 설></u>	<u>1</u>	+1
•	•	•	
•	•	•	
<u>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u> <u>또는 시설주사보</u>	<u><신 설></u>	<u>1</u>	+1
<u>임업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공업서기	<u>13</u>	<u>12</u>	-1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7</u>	<u>6</u>	-1
<u>공업서기·임업서기 또는 시설서기</u>	<u><신 설></u>	<u>4</u>	+4
<u>임업서기</u>	<u>2</u>	<u><삭 제></u>	-2
·	·	·	
·	·	·	
<u>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u>	<u><신 설></u>	<u>2</u>	+2
<u>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u>	<u>1</u>	<u><삭 제></u>	-1
<u>임업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주사보	<u>4</u>	<u>3</u>	-1
•	•	•	
<u>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u>	<u><신 설></u>	<u>1</u>	+1
<u>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주사보	<u>4</u>	<u>3</u>	-1
·	·	·	
<u>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u>	<u><신 설></u>	<u>1</u>	+1
<u>또는 방송통신주사보</u>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시설주사	<u>3</u>	<u>2</u>	-1
<u>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u>	<u><신 설></u>	<u>1</u>	+1
·	·	·	
·	·	·	
<u>식품위생서기보 또는</u>	<u><신 설></u>	<u>1</u>	+1
<u>위생서기보</u>			
<u>위생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시설주사	<u>3</u>	<u>2</u>	-1
<u>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u>	<u><신 설></u>	<u>1</u>	+1
•	•	•	
•	•	•	
<u>식품위생서기보 또는</u>	<u><신 설></u>	<u>1</u>	+1
<u>위생서기보</u>			
<u>위생서기보</u>	<u>1</u>	<u><삭 제></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임업서기보 · 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 <u>건축운영서기보</u> ·	· · <u>2</u> · · <u>1</u> ·	· · <u>3</u> · · <u><삭 제></u> ·	+1 -1